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
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여건을 조성하여,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 상 기 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)
- 출연예정액 : 150백만원(운영비 150백만원)

나. 주요 사업

-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
 - 운 영 비 : 300백만원(출연금 150백만원, 입사생수입 150백만원)
 - 운영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제세공과금 등

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안정적인 주거와 면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, 입사생 편의를 확대하고 학숙 운영을 효율화하여
- 지역 인재육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□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제7조(기금 출연)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김 종 연
	담 당 자	황 소 영 (480-2703)